2017년도 제1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시 2017년 8월 10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함 준 호 위 원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임 형 준 부총재보

허 진 호 부총재보 전 승 철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장 민 조사국장

신 호 순 금융안정국장 박 종 석 통화정책국장

이 환 석 금융시장국장 이 승 헌 국제국장

장 정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병 희 공보관

이 동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24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

(1) 의장이 의안 제24호「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을 상정하였음.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에 의거 금융중개지원 대출제도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 도입 및 폐지, 지원범위 조정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해「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제안설명 을 하였음. 이어서 본 안건의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변동성을 완화하고 통화신용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성 장부문 영위 기업과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창업지원 프 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한편 기존 한도 소진, 한 시 증액한도 운용시한 만료 등에 맞추어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및 순증액 기 준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운용을 종료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본 안건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 차례의 위원협의회에서 이미 논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관련부서에서 다음 의안과 관련하여 별도 보고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음.

(2)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개정(안)(생략)

<의안 제25호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이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호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 의안 제25호「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네 차례의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우선 위원들은 지난해 3월 수출, 투자, 고용 등의 부진에 대응하여 금융중개 지원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조원 증액하여 총 한도를 25조원으로 정하였는데, 최근 우리경제가 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지난해 무역금융, 설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시 증액한 5조원을 운용 기한 도래에 맞추어 신규 프로그램 한도로 전용하여 현행 한도 25조원을 유지하 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이러한 조치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설비투자 등 한시 지원부문에 대한 신규 지원은 종료되나, 기 취급분에 대해서는 만기 시까지 계속 지원하는 데다 신규 프로그램 도입, 지원대상 확대 등도 실시하므로 중소기업 지원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위원들은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용에 적극적이거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하되, 현행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간소화하여 실효성 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큰 부문에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으로 확대 개편하여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된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한편 위원들은 중앙은행 대출제도의 선별성을 완화하는 대신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 프로그램의 경우 현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신용공급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므로 운용하지 않더라도향후 금융·경제 여건,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변화 등에 따라 필요시 탄력적으로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이 중소기업대출의 안정적 공급과 중소기업 자금사정의 원활화를 통해 중 앙은행대출의 경기대응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전반적인 금융·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변화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음.

이어서 관련부서에서는 동 논의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할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25조원으로 하고, 프로그램별 한도는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6조원으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5.9조원으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1조원으로,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0.5조원으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5조원으로, 한도유보분은 0.1조원으로 각각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기자설명회에서 이번 제도 개편의 기본방향이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선별적이고 시의적인 성격을 완화하고 통화정책 본연의 취지에 맞추어 이를 운용하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세부 운용원칙을 마련하여 연말에 발표되는 「2018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개편 제도 시행 이후에는 의도했던 방향대로 자금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면밀히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운용 목적 및 체계상 통화정책보다는 신용정책의 성격이 더 크며 유동성관리 기능보다는 준재정 기능에 가깝다고 언급하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통화안정증권 발행금리와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간 차이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감안하여 동 제도 운용의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중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이번 제도 개편에서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에 통화정책 성격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한 후, 동 프로그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세부 운용체계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로(zero) 금리에 도달한 많은 중앙은행들의 경우 양적완화 채널을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제로 금리 상태에서 유동성 관리를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에 기인한 것으로 금리가 플러스인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의견을 덧붙였음.

아울러 동 위원은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운영 목적은 금융중개가 원활하지 않은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경제의 어느 부문에 신용공급이 원활하지 않는지를 선별하기 위한 연구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한은법」제64조에 의거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동 대 출의 금리수준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25조원으로 하고,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6조원으로 한다.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5.9조원으로 한다.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11조원으로 한다.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0.5조원으로 한다.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1.5조원으로 한다. 한도 유보분은 0.1조원으로 한다.